



일본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사례 및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최근 일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함. 개선내용으로는 별도의 간이(簡易) 기업형 DC제도 도입, 기업연금연합회에 투자교육 위탁 허용, 자산운용기본 방침 설정 및 정책적 자산 구성 의무화, 자산운용관계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등임.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투자교육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의 간이 기업형 퇴직연금 도입사례를 검토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투자 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자산운용 관계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 및 장기자산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은 2017년부터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¹⁾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함

- 제도 개선 배경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가입 저조 등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였기 때문임
 - 2001년 신(新)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급여제도에서 차지하는 퇴직연금의 비중이 감소하고²⁾ 투자 규제 완화로 안정적 자산운용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됨
- 따라서 간이(簡易) 기업형 DC제도 도입, 영세사업장 투자교육 강화, 자산운용 기본방침 설정 및 장기자산 설정의무화, 운용관계자의 수탁자책임강화를 내용으로 한 개선이 이루어짐(〈표 1〉 참조)

1) 국채발행 등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보전함과 더불어 과감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시행함

2)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퇴직연금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여 17.1%(2016년)의 수준에 불과함

〈표 1〉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개선 내용 및 목적

내용	목적	시행
별도의 간이 기업형 DC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2018년 5월
기업연금연합회에 가입자교육위탁 허용	영세사업장 근로자 투자능력 제고	2017년 1월
자산운용기본방침, 장기자산설정의무화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 장기자산운용유도	2018년 4월
운용관계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강화	자산운용관계자의 모럴해저드 방지	

자료: 일본 후생성의 퇴직연금 개선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함

■ 첫째, 퇴직연금 가입조건을 대폭 축소한 간이(簡易) 기업형 DC제도³⁾를 별도로 도입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함

- 기업형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조건을 과감히 완화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비용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자 간이 기업형 퇴직연금을 도입함
- 퇴직연금 필요한 서류 간소화, 규약변경시의 승인사항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함
 - 가입 시 필요 서류는 규약(안), 후생연금적용사업소확인 서류, 노동조합 동의서 등으로, 규약 변경 시 승인사항은 사업부 운영업무사항, 사업주보험료 납부사항 등으로 간소화함

■ 둘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투자능력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연합회 등에 계속투자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DC 연금법 개정으로 계속투자교육을 의무화하고 투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기업연금연합회에 투자교육을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교육 실시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이는 기업연금연합회 등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이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집합교육 방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투자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임

■ 셋째,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장기 자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2018년 4월부터 DB형 자산운용 기본방침 및 정책적 자산구성비율의 설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함

- 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목표, 운용자산 구성, 운용수탁기관 위임, 운용업무 내용 및 방법, 운용수탁기관 평가, 운용업무 준수 등과 같은 기본사항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DB형 적립금 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 운용의 자산 구성 비율(정책적 자산구성비율)을 규정하도록 함⁴⁾

3) 기업형 DC제도 별도로 도입된 제도로 후생연금피보험자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 가입대상임

4) 단기수익률중심의 자산운용을 지양하기 위해 법적으로 장기투자상품의 책정을 의무화함

■ 넷째, DB형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산운용관련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

-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DB형 자산운용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수탁자책임 강화 내용은 자산규모 100억 엔 이상 DB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배분은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수탁기관 선정·평가결과는 대의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임

■ 이처럼 일본이 퇴직연금 가입 유도, 영세사업장 투자교육 강화, DB형 자산운용 기준 및 책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투자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특히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음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간이 기업형 DC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투자 능력 제고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기준 마련 등으로 장기적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더불어 근로자와 자산운용관계자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 운용관계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 지침이 필요함 [kiri](#)